

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5일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
	소재지	본사	(전화번호:)
		사업장	(전화번호:)
신청내용	기술명칭		
	기술형태		
	기술특성		

신청사유

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해당 기술의 특성·용도 및 성능에 관한 자료 2. 해당 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3.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토 및 협의	→	판 정	→	신청인에게 통지
신청인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		